

의안번호	2214340
의 퇴 인	여기구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0.
추 계 번호	25G62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666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1,999억원(연평균 66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0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(연평균 2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증여세수는 2026년 630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1,890억 원(연평균 63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6년 16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49억원(연평균 1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 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9조의3)	-20	-20	-20	-60	-20
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71조제1항)	-630	-630	-630	-1,890	-630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제106조제1항 후단, 제111조제1항)	-16	-16	-16	-49	-16
계	-666	-666	-666	-1,999	-666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의3 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	
2	안 제71조제1항 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)	-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3	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 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11조제1항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)	-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목적으로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9조의3 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○	
2	안 제71조제1항 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)	○	
3	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11조제1항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연장된 적용기한을 고려하여 2026~2028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 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부동산 양도일이 포함된 연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(안 제69조의3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동 감면은 어업용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%를 감면하는 제도임
- (감면실적)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동 제도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후, 연도별 실적이 다소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

[표 2]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'23~'25년 연평균
감면실적	19	17	24	25	24	11	20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(2) 추계 방법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3~2025년 감면실적 평균(20억원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,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

(3) 추계 결과

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0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(연평균 2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					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9조의3)	-20	-20	-20	-60	-20

나. 영농자녀등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(안 제71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동 제도는 영농자녀등이 농지를 조기 이전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·초지·산림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
 - 동 제도의 증여인 및 수증인, 감면대상 자산, 감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주요 내용

		감면요건
감면 요건	증여인	-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, 그와 연결한 시·군·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-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
	수증인	-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-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
	대상 자산	- 농지: 「농지법」 상 농지로 4만㎡ 이내의 것 - 초지: 「초지법」 상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148,500㎡ 이내의 것 - 산림지: 「산지관리법」 상 보전산지 중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.7만㎡ 이내의 것,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 산림지의 경우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.7만㎡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㎡ 이내의 것 - 축사용지: 축사 및 축사에 따른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「건축법」 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- 어선: 「어선법」 상 어선으로 총 톤수 20t 미만의 어선 - 어업권: 「수산업법」 또는 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어업권으로 10만㎡ 이내의 것 - 어업용 토지 등: 4만㎡ 이내의 것 - 염전: 「소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㎡ 이내의 것
	감면내용	증여세의 100%
누적 감면한도		5년간 1억원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3조)
적용기한		2025.12.31.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감면실적)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을 살펴보면, 2020년 536억원에서 2021년 77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47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5]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	누적	연평균 (‘20~’24년)
감면실적	536	773	712	654	476	3,151	630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 방법

-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630억원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증여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
세수 감소효과	630	630	630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증여세수는 2026년 630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1,890억원(연평균 63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증여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71조제1항)	-630	-630	-630	-1,890	-630

다.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(안 제106조제1항, 제111조제1항제2호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
- (감면실적)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에 따른 조

세지출 실적은 2024년 16억원임

[표 8]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에 따른 감면실적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합 계	18	19	14	15	16
부가가치세	3	4	5	5	5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13	13	8	9	10
교육세	2	2	1	1	1

자료: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계기간 동안 2020~2024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치인 16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조세지출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없음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평균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6년 16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49억원(연평균 1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제106조 제1항 후단, 제111조제1항제2호)	-16	-16	-16	-49	-16
부가가치세	-4	-4	-4	-13	-4
교통·에너지·환경세(개별소비세)	-11	-11	-11	-32	-11
교육세	-1	-1	-1	-4	-1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, 신홍철	박연서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